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

행정재경위원회

| | |
|----------|-----|
| 의안 번호 | 215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18.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13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2023. 9. 1.)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이동호 의원)

가. 제안이유

- 강남구민이 관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 우선순위 세분화
(안 제5조제1항제2호~제7호)
- 사용 허가 시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5조제2항제1호~제3호)
- 그 밖에 입안 원칙에 따른 자구 수정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비용발생 없음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순위를 세분화하고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조례 중 일부개정안은 제5조만 개정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p> <p>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사</p> <p>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p> <p><신 설></p> <p>3.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 <p>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 -----.</p> <p>1. ----- “강남구”----- -----</p> <p>2. <u>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등의 행사 또는 활동</u></p> <p>3. <u>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 등의 행사 또는 활동</u></p> <p>4. <u>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현행 제3호와 같음)</u></p> <p>5. <u>직장 및 동호인이 참여하는 각종 단체의 행사</u></p> <p>6. <u>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u></p> <p>7.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p> |

| | |
|--------------------|---|
| <p><신 설></p> | <p><u>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u></p> <p>② <u>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u> 2. <u>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u> 3. <u>강남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u> |
|--------------------|---|

○ 개정안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제1항은 단체 중심의 사용자가 사용 신청할 경우, 경합에 대비하여 우선순위를 정비한 것으로 우선순위는 “강남구, 국가 또는 서울시 행사 → 보훈단체 → 장애인 단체 → 학교·청소년 → 직장 및 동호회 → 체육활동 이외 문화 행사 → 기타 체육진흥 행사” 순으로 정비하여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장애인단체 등을 제3호에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지역주민이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된 자기의 시설을 이용하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바, 타지자체 주민의 시설 이용을 원천 봉쇄한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15 |
|----------|-----|

발의연월일: 2023. 8. 18.

발 의 자: 이동호·김민경·한윤수·
전인수·복진경·오은누리·
손민기·박다미·이향숙·
김진경·강을석·우종혁·
이도희 의원(이상13인)

1. 제안이유

강남구민이 관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 우선순위 세분화
(안 제5조제1항제2호~제7호)
- 나. 사용 허가 시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5조제2항제1호~제3호)
- 다. 그 밖에 입안 원칙에 따른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비용발생 없음
-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구””를 ““강남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등의 행사 또는 활동
3.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 등의 행사 또는 활동
5. 직장 및 동호인이 참여하는 각종 단체의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강남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p> <p>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사</p> <p>2. <u>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u></p> <p><신 설></p> <p>3.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 <p>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 ----- -----.</p> <p>1. ----- "<u>강남구</u>"----- ----- ---</p> <p>2. <u>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등의 행사 또는 활동</u></p> <p>3. <u>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 등의 행사 또는 활동</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u>직장 및 동호인이 참여하는 각종 단체의 행사</u></p> <p>6. <u>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u></p> <p>7. <u>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u></p> <p>② <u>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u></p> |

으로 할 수 있다.

1.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
사하는 사람

3. 강남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